

미국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(GIPC)가 제시한 지식재산권 인정 및 보호의 중요성 발표

- 1.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한다.
- 2. 경제 성장과 시장 경쟁력을 주도한다.
- 3. 지식재산권은 소비자와 가족을 보호한다.
- 4. 글로벌 과제에 대한 획기적인 솔루션을 창출한다.
- 5. 혁신을 장려하고 기업가에게 보상한다.

기술 패권의 시대에 핵심자산이 된 특허

반도체 주도권 전쟁

- 반도체는 가전, 디지털, 인공지능, 첨단무기 체계 등 산업 전반을 지배
- 미중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

미국은 군용 칩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에 대한 반도체칩 제조 기술과 장비의 수출을 통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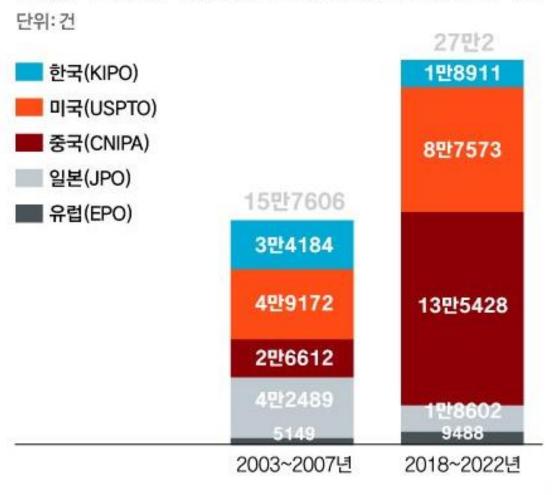
VS

중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에 판매한 제품이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마이크론제품 구매 제재를 실행

- 반도체 특허는 10년 뒤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선행 지표
- _ 반도체는 기술유출을 막아야 하는 핵심 안보 자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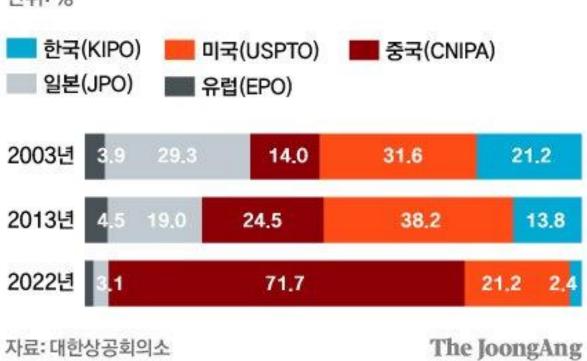
반도체 특허의 미중 쏠림 현상

IP5(한국·미국·중국·일본·유럽연합) 반도체 관련 특허건수 추이



IP5 특허건수 국가별 비중





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의 첫걸음은 표준특허

표준특허

-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로서 표준에 맞춰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사용
- 침해 입증이 간편하며 안정적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음
- 과학기술정책연구원(STEPI) 분석에 따르면 표준특허의 경제적 가치는 일반 특허의 12배로 분석된다



사진출처: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

'5G 표준특허 글로벌리포트, 렉시스넥시스, 2023

표 1: 상위 10위의 5G 특허권자

순위	기업	본사	5G 패밀리 기준 순위*	Patent Asset Index 5G 패밀리 기준 순위*	5G 관련 3GPP 기여도 기준 순위
1	Huawei	*3	1	3	1
2	Qualcomm		2	1	4
3	Samsung	:• :	3	2	5
4	Ericsson	-	6	6	2
5	Nokia	+	5	7	3
6	LG Electronics	(•)	4	4	8
7	ZTE	*0	7	8	6
8	Орро	*3	7	12	12
9	NTT	•	10	13	9
10	InterDigital	***	14	5	15

^{*}EPO 또는 USPTO에 등록된 유효 상태의 특허



전문가에 따르면 선언된 5G 특허 중 실제로 필수적인 것은 약 10~20%에 불과

수익을 창출

화웨이

- 2022년 특허 수익 7231억원
- 삼성전자·포르쉐 등 기업과 200건 계약
- 5G 등 통신 부문 특허 점유율 세계 1위
- 미국 제재로 수익 급감하자 '특허권 장사' 본격화

특허 수익화 전문기업- 아이디어허브(중소기업)

- 2016년 설립한 이 회사는 국내 중소·중견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으로부터 특허 권리를 확보해 이를 수익화하는 사업 모델
- 휴대폰 제조업체 팬택의 1400여 개 특허를 구매, 보유 특허만 3000건 이상
- 주요 특허 보유 분야는 통신과 차세대 비디오코덱, 무선인터넷, 스트리밍, 사물인터넷(IoT) 등
- 구글과 메타(옛 페이스북), 테슬라, BMW, 벤츠, 소니 등 해외 주요 대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연간 특허 사용료 매출이 500억원

7

고액의 특허소송비

NPE란 Non Practicing Entity의 약자로, 제조업을 하지 않고 특허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여 수익 창출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의미

<최근 5년간 미국 내 특허소송 우리기업 피소 현황>

						1241 - 1
구 분	'18	'19	'20	'21	'22	계
합 계	180	127	160	192	149	808
NPE 제소	132	90	111	149	126	608
제조기업 제소	48	37	49	43	23	200
NPE 소송 차지 비율(%)	73.3	70.9	69.4	77.6	84.6	75.2

1998년 인텔과 NPE인 테크서치와 특허분쟁에서 '특허괴물(Patent Troll)'이라는 용어가처음 사용

/CFSI - 211

삼성이 애플은 수 억달러의 소송비를 지불

SAMSUN	삼성전자-애플 소송 일지
2011년 4월	애플, 미 법원에 삼성전자 제소(스마트폰 디자인·특허 침해)
2011년 6월	삼성전자, 애플 맞제소. 이후 한국·독일·일본 등 9개국으로 소송 확대
2014년 3월	미 법원 1심, 삼성 특허 침해 인정(총배상액 9.3억달러 판결)
2014년 7월	양사, 미국 외 소송 모두 취하 합의
2015년 5월	항소법원, 1심 일부 파기·배상액 감액(삼성, 애플에 5.48억달러 선지급)
2016년 12월	대법원, 항소심 일부 파기·환송
2018년 5월	미 법원 1심, 배심원 재평결(총배상액 6.89억달러)
2018년 6월	삼성전자-애플, 특허소송 합의 발표

미국 뉴욕타임스(NYT)는 "양사는 아무것도 쟁취하지 못한 소송이었다. 유일한 승자는 로펌"

강화되는 특허정책

미국

〈 미 지식재산정책 관련 부처 개요〉

	미 특허청(USPTO)	미 저작권청(USCO)
관할기관	미 상무부	미 의회도서관
기관장	대통령 임명 및 상원의 인준	의회도서관장이 임명
예산	정부예산 지원 없음, 특허 출원자·소유자가 납부한 수수료만으로 운영	미 의회 도서관 예산 투입

자료: 손수정 외(2021), 「국가지식재산위원회 10년 성과 및 미래 발전방안 연구」 참고 후 재구성

2023년 연례 지식재산권 의회 보고서(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o Congress)'

미국 특허상표청 (USPTO)

- 세계지식재산권기구(WIPO) 집행자문위원회 참여 및 다자간 포럼 등을 주도
- 해외 무역 및 IP 글로벌 동향에 대한 'Special 301' 보고서 작성
- 글로벌 IP 아카데미(Global Intellectual Property Academy, GIPA)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

중인 미국 중소기업(SMEs)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

중국

- -2020년 「특허법」 제4차 개정안 통과(2008년 이후 12년만)
- 한국 미국 등 주요국의 특허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

새로운 특허법의 특징

-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.
 -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
- 손해액에 관한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완화
- 디자인 보호제도를 강화
 - -디자인 보호기간을 현행법의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
 - 부분디자인제도
- 신약 출시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신설
 - 판매가 승인된 신약 관련 특허에 대해 의약품 허가에 소요된 기간만큼 최대 5년까지 특허의

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

한국

- -우선심사 제도 개편 : 첨단기술·국가전략기술 빠른 권리화 지원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녹색기술 등
-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 확대
 (종전) 22개 기관(공공8, 민간14) → ('23.12.13~) 33개 기관(공공8, 민간25)



지식재산권의 종류

➤ 지식재산권이란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재산권으로서 보호 받는 권리 (Intellectual Property Rights) * 영업비밀보호제도

	산업재산권
특 허 권 실용 신안권 디 자 인 권 상 표 권	기술적 창작인 원천, 핵심기술(대발명) Life-Cycle이 짧고 실용적 개량기술(소발명)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의 형상, 모양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, 문자, 도형

	저 작 권
저작권(협의) 저작인접권	문학, 예술 분야 창작물 실연자, 음반제작자, 방송사업자 권리

신지식 재산권			
산업저작권	반도체배치설계, 생명공학, 식물신품종 컴퓨터프로그램, 인공지능, 데이타베이스		
정보재산권	영업비밀, 멀티미디어, 뉴미디어		

특허제도의 구조

특허제도의 목적

- 발명을 보호 .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발전을 촉진시키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(법 제1조)
 -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

발명의 정의

-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(법 제2조)

특허요건(법 제29조)

-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(산업상 이용가능성)
-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(선행기술)이 아니어야 하고(신규성)
-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개량되어 진보된것이어야 함(진

보성)

특허권의 효력

- 존속기간은 20년(실용신안권은 10년)
-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발생(속지주의)

특허사이클

출원 시 고려사항

- ★ 우선심사신청여부 (4~5개월이면 결과 나옴, 비용은 추가됨)
- ★ 조기공개신청여부 (즉시가능, 보상청구권발생, 타 출원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선행기술 역할)
- ★ 심사청구여부 (5년이내 청구가능)
- ★ 청구범위유예제도 활용여부 (청구범위없이 출원 가능)
- ★ 신규성 상실여부에 대한 증명 (출원전 자의, 타의에 의하여 공개된 경우)
- × 해외출원 시 1년 이내 우선권 주장

특허 요건(발명성, 선원)

- ▶ 발명 성립성
 - 자연의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(특허법 제29조 제1항 전문) (비 발명 사례)
 - 경제법칙, 진료방법, 수학적 알고리즘, 암호풀이 방법, 무한 동력원
- ▶ 선 출원일 것(선원주의)
 - 동일한 발명인 경우 먼저 특허 출원한 사람만이 특허 받을 수 있음
 - 특허 청구범위 선원 : 특허법 제36조
 - 특허명세서(상세한 설명 및 도면) 선원 : 특허법 제29조 제3항

특허 요건(신규성)

- ▶ 신규성 인정 안되는 경우
 - 그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 . 공용 되거나,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 또는 공중이 이용 가능한 Web에 기재된 발명(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-2호)

- ▶ 신규성 예외 경우
 - 다음 경우 12개월 이내 증명서류를 갖추어 특허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음 (특허법 제30조)
 - * 출원인에 의하여 공지 또는 공연이 실시된 발명
 - *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 또는 공연이 실시된 발명 (간행물 게재 또는 공중회선을 통한 공개)

특허요건(진보성)

▶ 진보성

- 그 출원일 전에 공지.공용 또는 반포된 간행물,전기통신회선의 이용에 의해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특허 받을 수 없음 (특허법 제29조 제2항)
- 판단기준 : 동일분야에서 진보된 구성,새로운 작용 및 효과,목적

특허요건(명세서 기재불비)

- ▶ 실시 가능한 명세서 기재
 -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하는 것이 바람직
 - 공지된 기술과 발명의 특징인 기술은 다르게 기재
- 기본 발명을 충실히 기재하고 실시예는 특징적인 것 중심으로 기재

특허요건(청구범위 기재불비)

- ▶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될 것
 (예) 청구범위 : 밑받침 + 다리 + 등받이
 발명의 상세한 설명 : 밑받침 + 다리 → 거절
- ▶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할 것
 (예) 청구범위 : 밑받침, 다리, 등받이
 → 구성요소 상호간 결합관계 불명확 → 거절
- ▶ 구성에 꼭 필요한 사항만으로 기재 하는 것이 바람직
 (예) 청구항에 발명의 목적, 작용, 효과만이 기재되어 있고 구성이 기재되지 않은
 경우 또는 발명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 구성요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→ 거절

특허요건(산업상 이용 가능)

- ▶ 반복 재현 가능한 발명
- ▶ 산업분양의 광범위
- ▶ 장애 이용가능한 것도 발명으로 가능

영업비밀 보호제도

영업비밀 일반개요

- ▶ 영업 비밀의 요건
 - 비공지성: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
 - 경제성: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
 - 비밀유지성: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해야 함

영업비밀 침해유형

- ▶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
 - 절취, 기망,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
 - (예) 은밀한 복사, 전자적 감찰에 의한 산업스파이 행위, 산업스파이를 심는 행위, 다른 종업원을 매수하는 행위
 - (예) 고용계약이 종료된 후 퇴직 종업원이 종전 영업주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위반 하도록 유인 하는 행위
 - (예)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 타인의 영업비밀을 탐지하는 일체 행위도 가능성이 있음
- ▶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, 개시하는 경우
 - 퇴직 종업원이 종전의 고용관계에서 취득하게된 지식이나 기술을 새로운 영업주 또는 그 스스로를 위하여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 - (예) 종전의 고용관계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취득한 정보는 공개 할 수 없음

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

- ▶ 민사적 구제
 - 금지 청구
 - 손해 배상 청구
 - 신용 회복 조치의 청구
- ▶ 형사적 구제

(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 제 18조 2항)

-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한 자
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

연구노트 활용

- ▶ 연구노트 활용
 - 연구수행과정이 기록된 자료임
 - 특허권, 연구선취권의 법적 증거가 됨
 - 연구의 진실성을 증명, 연구 내용을 타인에게 전수 가능
 - 미국의 선발명제도하에서 특허권 취득에 결정적 증거로 활용
 - 라이센싱 시 활용
 - 영업비밀 부정사용 공격에 대한 방어 자료로 활용
 - *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잡음